

8. 駐車場法施行令改正(案)

立法豫告 1990.4.13 公告

1. 개정배경

자동차 보유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주차시설의 부족은 교통장애를 야기하고 거리질서를 저해하니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정비를 위하여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동법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차장 정비지구내에 설치하는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 건폐율 : 9/10 이하
-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 m^2$ 이상
- 용적률 : 1,300 %이하

범위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나. 택지개발사업, 주택지조성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도시설계등 일정규모 이상의 단지조성사업을 할때는 교통영향 평가에 의하여 요구되는 노외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함.

다.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호텔, 종합병원, 예식장, 골프장등의 경우에는 각각 객실수, 병상수, 좌석수, 홀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 은행등의 업무시설, 백화점, 위락시설등의 경우는 현재의 면적기준으로 하여, 시·군의 조례로 주차장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2분의 1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함.

라. 현행법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차량통행금지구역에서 차량통행금지기간내의 용도변경, 시설물 내부에서의 위치변경과 시설물 부지내에서의 위치변경을 허용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토지와 시설물의 이용도를 높임.

마. 민자에 의한 주차장 설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도로, 광장, 공원에 한하여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 점용료를 감면토록 되어 있으나, 학교(대학제외)운동장의 지하와 하천, 유수지등의 상부에 주차장을 설치한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영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0년 5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를 건설부장관(참

조: 도시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주택정보

주택산업□부동산매물□주생활향상의 종합정보지

“**아**파트정보는 주택정보라고 해도 이제는 누구나 믿습니다. 12년을 지켜온 신뢰의 텁이 그것을 반증합니다.
신속한 정보와 정확한 기사,
예리한 예측기사는 또하나의 애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내집마련을 시작하는 사람에서부터
꾸미고 가꾸는 모든 이에게
필요충분한 주생활 백과임을
자부합니다.””